

2026년 제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

2026년 조리읍 제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
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9일

조리읍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근무부서	분야	인원	기간	보수
조리읍 마을지원팀	설해대책 제설지원	1명	2026. 11. 16. ~ 2027. 3. 15.	기본급 월 2,179,870원 외 기타수당 지급 (4대보험 가입)

2. 응시 자격기준

-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같은 규정 제15조(근로
계약 종료 등)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 중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«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»

- 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.
-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(2013. 7. 1. 「민법」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)
- ③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⑧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
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⑨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
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⑩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⑪ 경력 또는 학력,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
- ⑫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⑬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- 응시연령 :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
- 거주지제한 :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**파주시**에 소재한 자
- 성별·학력 : 제한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)
- 감염성 질환이 없는 자
- 자격조건 :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1톤 화물차 운전 가능자, 기상특보시 야간 및 휴일근무가
가능한자
- 우대조건(면접전형 시 가점)

- 「국가유공자법」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
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
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
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
자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- 조리읍 제설근로자, 풍수해감시인 등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(살포기 운용 가능자)

3. 모집 방법

- 1차 시험 : **서류전형** (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심사)
- 2차 시험 : **면접전형** (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 및 적격성 검증)
※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, 면접점수 100점 만점 중 50점 이상
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.
- 선발기준 : 최종합격자는 면접전형 합격자 중 면접점수와 채용시험 가산점을 합산한 최
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- 채용시험 심사 기준 : “붙임1” 참조
- 면접전형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
 -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,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(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
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) ※ “붙임2” 채용시험 가점기준 참조
 - 동점자 처리기준 : ①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 대상자(취업지원 대상자), ②
사회형평가점 대상자, ③면접점수 고득점자, ④면접 평정요소 중
“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” 평가점수 상위자, ⑤경력가점 대상자, ⑥
동점자에 대한 면접위원 재평정 고득점자, 순서로 선발

4. 공고 및 원서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10. 29.(목) ~ 11. 4.(수) 09:00~18:00
※ 점심시간 12:00~13:00 및 주말(휴일) 접수 불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
- 접 수 처 :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지원팀(☎031-940-5307)
- 합격자 발표 : 합격자 개별통보
 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6. 11. 5.(목)
 - 면접시험 일정 : 2026. 11. 6.(금) ※면접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
 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6. 11. 9.(월)※각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.
- 제출서류
 -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제1호 서식)
 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(별지 제2호 서식)
 - ③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(별지 제3호 서식)
 - ④ 공정채용 확인서 1부 (별지 제4호 서식)
 - ⑤ 주민등록등본 1부
 - ⑥ 운전면허증 사본 1부
 - ⑦ 지원분야 경력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 - ⑧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※ 국가유공자확인원은 불인정(취업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불가)
 - ⑨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1부 (해당자에 한함)
※ 장애인증명서,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

5. 근무형태 및 업무

- 근무형태 : 기간제 근로자
- 근무기간 : 2026. 11. 16. ~ 2027. 3. 15.
※ 채용기간은 예산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- 근무시간 : 주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
- 담당업무
 - 조리읍 관내 도로 등 제설작업
 - 제설관련 장비 운영·관리 등
 - 미관 등 환경정비 지원

6. 기타 유의사항

- 소정 근로일은 주 5일(월~금)이고,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나 근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기상 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 (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 지급.)
- 응시자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(응시서류반환청구서 작성)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, {최종 채용 합격자,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 및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},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함.
- 채용과정 중 인사청탁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채용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.
-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.
-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-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, 중도 퇴사, 합격 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비합격자(차순위자)를 채용할 수 있음.
-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.
 -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
 - 예산부족 등으로 고용해지가 불가피할 때
 -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 - 무단결근·지각·조퇴를 비롯, 근무시간 미준수, 근무지 이탈, 기타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음주, 연락두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
-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마을지원팀(☎031-940-5307)

<별지 제1호 서식>

응시원서

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,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사진부착 (6개월 이내 반명함판)	인 적 사 항	성명	한글		생년월일	
			한자			
		현 주소 (우:)				
		e-Mail		병역사항	필, 면제, 미필 기간: -	
		자택전화		휴대폰		
가점사항 ☐ 법정가점(국가·독립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) ☐ 사회형평가점(수급자·장애인·한부모가족·북한이탈주민) ☐ 경력가점						
학 력 사 항	학 교 명	재 학 기 간	전 공	수학구분	소재지	
	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		
	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		
				졸업/재학/수료/중퇴		
경 력 사 항	직 장 명	근 무 기 간	근무부서	담당업무	퇴직 사유	
자 격	자 격					
	자격명	취득일자		발급기관		
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 2026년 월 일 작성자 : (인)						

자기소개서

성명	(한글)	연락처	
	(한자)	자택	
생년월일	. . . (만 세)	휴대전화	
E-mail			

. . .

작성자 (서명)

〈별지 제2호 서식〉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•이용을 하고자 합니다.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읽어보신 후, 동의 여부를 체크,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동의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	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
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	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 번호, 이메일주소, 생년월일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계약자(계약기간 만료 시), 신청인(1년)

※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신청서 제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☐ 동의함	☐ 동의하지 않음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▶ **민감정보의 수집.이용 동의**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	기간제근로자 채용
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	주민등록등본, 응시원서 기재 내용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계약자(계약기간 만료 시), 신청인(1년)

※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신청서 제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☐ 동의함	☐ 동의하지 않음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본인은 본 “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동의서”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2025년 2024년

성명 : (서명) 또는 (인)

〈별지 제3호 서식〉 취업제한 체크리스트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〈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〉

1.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☐ 비해당 ☐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☐ 비해당 ☐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☐ 비해당 ☐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	해당 ☐ 비해당 ☐
4-3. 권익위법(“16.3.29. 제14145호”) 시행(“16.9.30.”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☐ 비해당 ☐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☐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☐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6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 지 원 자 (서명)

공정채용 확인서

파주시는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,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친인척 관계(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)의 직원이 있을 경우, 1번, 2번, 3번 작성
- ※ 친인척 관계(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)의 직원이 없을 경우, 1번만 작성

1. 파주시에 본인의 4촌 이내 친척이 근무하고 (있다./ 없다.)
2. **친척 관계에 있다면**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연번	성명 (본인)	친인척 직원					
		성명	소속기관	부서명	직급	본인과의 관계	기타

3.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. (그렇다./아니다.)
4. 본인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였다.(그렇다./아니다.)
5. 허위, 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.(그렇다./아니다.)
6. 채용 담당자가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.(그렇다./아니다.)

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,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- [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고지]
- ① 수집·이용 목적
- 채용비리 여부 조사, 파주시 홈페이지 친인척 채용현황 게시, 감사자료 작성
- ② 수집·이용 항목
- 친인척 직원 성명, 소속부서, 직급, 파주시 직원과의 관계
- ③ 보유기간 : 재직기간 동안 보유

파주시장 귀하